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219호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사전컨설팅"이란 영 제5조에 따라 공무원 등이 인·허가 등 규제, 불명

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부내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혁신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로 지정하며, 그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감사담당관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8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④ 적극행정 보호관은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책임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부내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부내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부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내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관 및 이러닝 등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조(적극행정 법제)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설치)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6.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자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부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제32조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출석·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하며, 그 의결권 행사는 해당 위원 본인이 행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6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공무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간사) ①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0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4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

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사상 우대조치

제2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인사상 우대조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등급 부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을 제27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

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절 지원내용

제30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영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2조(재난·안전 분야 사후 추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후 추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사안의 긴급성, 조치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며, 위원회가 추인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사후 추인의 요청 및 심의·의결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33조(변호인 등 보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소 이전의 수사절차별로 하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불복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변호인 등 선임) ① 제33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보호관은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보호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35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적극행정 보호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

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2절 지원절차

제37조(지원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8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해 제37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37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9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3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3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4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

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처분 통지서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제43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제4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4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45조(변호인 등 보수 반환) ① 제4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6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장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47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정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폐지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소속(※없는 경우 생략)

직급(위)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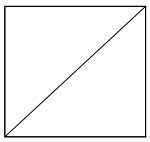
귀하를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0000. 0. 00.)

0000년 0월 0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의안번호	제0000 - 00호
의 결 연월일	0000.00.00 (제00회)

의 결 사 항

심사(안)

제 출 자	
제출연월일	0000. 00. 00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 대응 [] 기타_____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의견제시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안건의 쟁점·고려사항, 갑설·을설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안건에 대한 요청인의 최종 의견 및 추진이 필요한 당위성* *관련 부서·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중 특기할 사항* *※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첨부서류	*관련 규정 및 정책*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판례·유권해석, 기타 통계자료 등*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예정일*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증빙자료 첨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기 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작성 방법

- 감사원 감사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원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자문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자문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첨부서류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신청 감사기구의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안건 심의서

안건번호	안 건 명

핵 심 심 의 내 용	심의의견			
	가(可)		부(否)	철회 권고
	원안 의결	부대 권고		
※ 심의·의결내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심사의견](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심의의견 종류

- **(원안의결)** 제출된 안건을 내용변경 없이 그대로 의결
- **(부대권고)** 제출된 안건을 의결하되, 사전검토사안 등 부대사항 제시
- **(개선권고)** 제출된 안건을 수정·개선하도록 권고
- **(철회권고)** 제출된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반려

0000. 00. 00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앞쪽)

연번	후보자 또는 담당부서	주요성과	합 계	평가항목				
				① 국 민 체감도 (20)	② 담당자 적극성 (30)	③ 중요도, 난이도 (20)	④ 창의성, 전문성 (20)	⑤ 확 산 가능성 (10)

0000. 00. 00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서명 또는 인)

< 심사 방법 >

1. 심사 기준 *(예시)*

평가지표 (배점)	주요 내용
① 국민 체감도 (20점)	▸국민 생활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를 평가
② 담당자 적극성 (30점)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③ 중요도·난이도 (20점)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관련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 환경 등을 평가
④ 창의성·전문성 (20점)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를 평가
⑤ 확산 가능성 (10점)	▸동 사례에서 나타난 적극행정 노력이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2. 점수 부여 기준 *(예시)*

구 분	지표별				
	국 민 체감도 (20)	담당자 적극성 (30)	중요도 난이도 (20)	창의성 전문성 (20)	확 산 가능성 (10)
매우우수	17~20	25~30	17~20	17~20	9~10
우수	13~16	19~24	13~16	13~16	7~8
보통	9~12	13~18	9~12	9~12	5~6
미흡	5~8	7~12	5~8	5~8	3~4
매우미흡	1~4	1~6	1~4	1~4	1~2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심의일자	
안건명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심의일자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제4호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종합 의견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출석요구서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관련 안건명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제출 요구서·서면질의서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요구유형	[] 자료제출 [] 서면질의			
관련 안건명				
제출자료 (질의내용)				
제출(답변) 기한	년 월 일 까지			
제출(답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자료제출 요구, [] 서면질의를 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기피신청서

신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소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안건명			
안건유형		심의일자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해당 (비공개 사유 : _____) [] 해당 없음
비공개 등 요청 유형	[] 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심의 주요내용	
비공개 등 요청 사유	

위와 같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작성 방법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210㎜×297㎜[백상지 80g/㎡]

회의 목록 대장

회차	접수일	신청 부서 (공무원)	개최일	방식	안건 유형	안건명	심의결과	심의 주요내용	공개여부
00	*00-00-00*	*0000과*	*00-00-00*	*대면 서면*	*제2호 의견제시*		*수용 불수용*		*공개 비공개*

작성 방법

- 안건유형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해당 호를 기재
- 방식 : 회의방식 서면, 대면, 온라인 등 기재
- 심의결과 : 수용, 불수용, 반려, 취하 등 기재
- 심의 주요내용 : 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
- 공개여부 :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 기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담 당 자</td><td colspan="2">소속 :　　직 급 :　　성 명 :</td></tr>
<tr><td>담당업무</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신 청 내 용</td><td colspan="2">[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선임 지원</td></tr>
<tr><td colspan="2" rowspan="3">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td><td colspan="2">징계의결 요구</td></tr>
<tr><td>요구일</td><td>관할 징계위원회</td></tr>
<tr><td></td><td></td></tr>
<tr><td colspan="2">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colspan="2">[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td></tr>
<tr><td colspan="4">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담 당 자</td><td colspan="4">소속 :　　직 급 :　　성 명 :</td></tr>
<tr><td>담당업무</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신 청 내 용</td><td colspan="4">[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td></tr>
<tr><td colspan="2" rowspan="3">사 건 번 호</td><td colspan="2">고소·고발 등</td><td colspan="2">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td></tr>
<tr><td>접수일</td><td>관할 및 사건번호</td><td>접수일</td><td>관할 및 사건번호</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사 건 개 요</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colspan="4">[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td></tr>
</table>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 결정일	지원내용	징계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210㎜×297㎜[백상지 80g/㎡]

■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 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210㎜×297㎜[백상지 80g/㎡]